

[별지서식 제1호 앞면] 본 광고사전검토필증은 온라인을 통해 교부되었습니다.

접수번호	광고사전자율심의신청서				처리기간
01-01-P-1500302					7일
신청자명	좋은날플러스	대표자	남준희	사업자등록번호	101-08-06448
신청자주소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8-95 2층 좋은날플러스			연락처	담당자명: 남준희
					연락처: 010-4660-8571
					팩스: 02-447-0901
광고 상품명	남자의팔자 팔자보	광고주명	남준희	광고매체	신문 (A안)
대행사명	좋은날플러스	제작자명	좋은날플러스	심의구분	초심 O 수정심
검토의견					
수정 및 삭제 요망 사항 1. 손오공 그림 삭제. 끝.					
변경내용					

광고물의 사전 검토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귀중

2015년 9월 17일
신청인 좋은날플러스

심의의결	심의결정	광고적합	2015년 9월 22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번호	15-P1-09-1	
	기타		

※ 주의사항은 뒷장에 첨부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1호 뒷면] 본 광고사전검토폰증은 온라인을 통해 교부되었습니다.

광고 이미지

심의결정
심의번호
기타

힘(力)없는 당신...

힘차고 당당하게..활력있게!

100% 순수 자연초재... 당신도 당당해 질 수 있습니다.

남자의 팔자(八字)

“팔자보”는...일시적인 유도를 위한 화학성분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일체의 유해성분 없이 100% 순수 자연성분으로 조성된 추출물로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게 설계된 제제입니다.

보는 바로 이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한쪽 산촌허브에서 출시 한 팔자보는 좋은날플러스(건강전문업체)에서 독

▶원광대학교 가족회사 산촌허브(주)제조
▶김용식박사 개발(원광대학교 박사)
▶100%자연성분만으로 조성된 자연추출물

힘차고 당당한 남성 성공하는 남성을 위해...

“한국 사람들은 성적이 급한 나머지 먹고 바로 효과를 기대합니다. 그런 것이 과연 있을까요? 약효성분이 들어간 불법제품이 아니라면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소문이 무성한 것들을 찾아 이것저것 먹고 기대해보지만 마른수건에 물을 짜는 것처럼 실망만 거듭될 뿐입니다. 팔자보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제품입니다. 남자의 팔자 팔자보는 여덟가지 식물의 씨앗을 주원료로 제 명예를 걸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만족스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 본 제품은 약역물이 아닙니다.
• 본 제품은 소세지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발 및 제조 : 산촌허브(주) • 판매처 : 좋은날 플러스

문의 : 1566-2775

◆ **즐거움 삶, 남성생활에 활력을**
최근 원광대학교 가족회사로 등록된 (주)산촌허브 연구팀은 기존 추출방식과 다른 새로운 추출법을 통해 각각의 가지고 있는 고유성분이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연구 하였다. 이번에 출시한 ‘팔자보’는 일시적인 유도를 위한 화학성분으로 만든 제품이 아니며 8가지 식물의 씨앗으로 100% 순수 자연원료만으로 조성,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김용식 박사가 본인의 명예를 걸고 직접

만든 것으로 남성의 기력을 보강하는데 도움을 준다.

◆ **임치고 당당한 남성 활력있게**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인체의 생체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매사에 의욕이 없거나 무기력하며 감정에 민감하고 괜히 슬프며 우울증이 생긴다. 화를 자주내고 열이 자주 오르며 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피로와 스트레스로 지친 현대인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팔자

◆ **순수 자연성분 100%**
‘팔자보’는 대한민국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자연초재와에는 어떠한 화학물질도 넣지 않고 제조되었으며 남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게 설계되어 많은 남성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점 공급, 판매하고 있다.

“팔자보”는 일체의 유해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으며 이제까지 다른 제품에 불만족하셨던 분들 꼭 연락 주십시오.

심 의 의 결	심의결정	광고적합	2015년 9월 22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번호	15-P1-09-1	
	기타		

※ 필증 사용시 주의사항

- ①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② 원하실 경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에 검토 받은 사실을 심의필 광고물에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물 우측상단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사전검토필 심의번호> 문구로 한정하며, 기구 로고 필요 시 사무처에 별도 문의바랍니다.
- ③ 2항의 표시 이외에 광고표현 내 심의기구 언급은 불허합니다.
- ④ 필증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⑤ 필증을 위·변조하거나 상기 사항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 ⑥ 필증에 대한 확인 및 기타 문의는 기구 사무처(02-2144-4300/4304)로 연락 바랍니다.